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란을 각각 삭

제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별표 2)

등기관서명	번호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201

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
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기관서명	번호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201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신 설>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1201	<삭 제>	
" 부천지원	1211	" 부천지원	1211
" 동인천등기소	1241	<삭 제>	
" 북인천등기소	1242	<삭 제>	
" 김포등기소	1244	" 김포등기소	1244
" 강화등기소	1245	" 강화등기소	1245
" 남동등기소	1247	<삭 제>	
" 계양등기소	1248	<삭 제>	
" 서인천등기소	1249	<삭 제>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